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금융정보조회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을 기반으로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 사이에 핀테크 서비스를 통한 금융정보조회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이란 핀테크 기업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은행권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표준화된 플랫폼을 말합니다.
- ② “핀테크 기업”이란 금융결제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 ③ “금융정보조회”란 사용자가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제5조에 명시하는 본인명의 계좌의 금융정보조회 요청시 은행이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④ “오픈플랫폼중계센터”란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은행과 핀테크 기업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담당합니다.

제3조 (금융정보조회 신청)

- 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오픈플랫폼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금융정보조회 신청을 하며, 관련 정보는 해당 은행으로 전달됩니다.
- ② 사용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서면(공인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정보조회 동의 방법에 의하여 금융정보조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③ 오픈플랫폼중계센터는 사용자의 금융정보조회 신청시 사용자가 신청한 실계좌번호를 가상의 계좌번호(이하 “핀테크이용번호”라 한다)로 핀테크 기업에 제공합니다.
- ④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보호받고 관리하기 위해 금융정보조회 신청을 1년 단위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제4조 (금융정보조회 이용시간)

금융정보조회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로 합니다.

제5조 (금융정보의 종류)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잔액조회 : 사용자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실시간 잔액 조회
2. 거래내역조회 : 사용자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실시간 거래내역(거래일시, 거래점명, 거래금액, 거래 후 잔액, 통장인자내용) 조회

제6조 (금융정보제공 및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

- ① 사용자가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은행으로 금융정보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별도의 통지 없이 사용자의 금융정보 내역을 오픈플랫폼중계센터로 통지하며, 오픈플랫폼중계센터는 실계좌번호를 핀테크이용번호로 변경하여 핀테크 기업으로 통지합니다.
- ② 은행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오픈플랫폼중계센터에 등록한 연락처로 사용자에게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사용자는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오픈플랫폼중계센터에 등록한 연락처를 변경하여야 하며,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은행은 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3개월이내 단위로 통보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금융정보조회 중단)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정보조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관련 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타 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금융정보조회 해지)

- ① 사용자는 오픈플랫폼중계센터에서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금융정보조회 해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금융정보조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관련 법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1년 이상 핀테크 기업의 조회요청이 없는 경우

제9조 (면책 사항)

은행은 고의·과실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핀테크 기업의 전산장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도용, 위조, 변조 기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용자의 요청대로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이외의 제3자가 통지된 내용을 인지한 경우

제10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금융정보조회와 관련하여 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1조 (약관의 변경)

-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가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의 약관의 변경내용을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 ① 금융정보조회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8. 21 일부터 시행합니다.